

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대청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안에 설치되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전직할시장, 충청남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분담규정하는 협약에 따라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세입)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.

1. 대청호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분담금.
2. 이 월 금
3. 기 타

제 3 조(세출) 이 회계의 세출은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안에서 발생하는 오·폐수(공장폐수를 제외한다)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, 운영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.

1. 하수종말처리장
2. 간이오수처리장
3.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동처리장

제 4 조(잉여금의 처리) 이 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충당한다.

제 5 조(준용)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